

# 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[www.seoul.go.kr](http://www.seoul.go.kr)

제3640호

2021.1.4.(월)



**목 차**

◆ 고 시

제2021-7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 
고시 ..... 2

제2021-8호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업 방역  
조치 고시 ..... 8

제2021-9호 특수판매업(방문판매·후원방문·다단계) 집합금지명령(기간연장) ..... 12

제2021-10호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(2.5단계 연장)에 따른 노래연습장, PC방,  
영화관, 오락실·멀티방, 직업훈련기관, 대형유통시설, 콜센터 등 방역조치  
고시 ..... 13

**고 시**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호

**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연장에 따른  
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**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연장과 관련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,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(유흥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헌팅포차), 음식점 및 카페 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), 홀덤펍 (유사영업 형태 포함) 등, 무인카페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월 4일  
서울특별시

1. 집합금지 조치

- 기 간 : ' 21년 1월 4일(월) 00시 ~ ' 21년 1월 17일(일) 24시
- 대 상 :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(유흥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헌팅포차) 및 홀덤펍 (유사영업형태 포함) 등
- 내 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
- 위반 시 조치사항
  - 행정조치 위반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발 조치 (벌금 300만 원 이하)
  -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

2. 집합제한(방역수칙 준수 의무화) 조치

- 기 간 : ' 21년 1월 4일(월) 00시 ~ ' 21년 1월 17일(일) 24시
- 대 상 : 서울시 소재 음식점, 카페 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) 및 무인카페 (식품자동판매기 영업)
- 내 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(핵심방역수칙<sup>1)</sup> 준수 의무화 조치
- 위반 시 조치사항
  - 행정조치 위반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(기본 2주)
  -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(벌금 300만 원 이하)

1) 붙임1 영업형태 별 핵심방역수칙 참조

-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,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
  - ▶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,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(10만원)
-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

3. 영업형태 정의

○ 음식점 및 카페

음식점	카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「식품위생법」상 일반음식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만,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■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【분식점, 패스트푸드, 편의점(음식을 조리·판매하는 경우에 한함) 등】</li> </ul> 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top: 5px;">                     (식사료와 곁들이는 커피·음료·디저트류)                      커피·음료·디저트류(제과제빵, 아이스크림/빙수 등)로 식사 끝에 나오는 음식                 </div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프랜차이즈형 카페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전문점,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,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/빙수전문점</li> </ul> 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top: 5px;">                    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(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식업종 중 커피전문점, 음료[커피 외]전문점, 제과제빵점, 아이스크림/빙수전문점)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              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「식품위생법」상 제과점 영업</li> <li>■ 「식품위생법」상 휴게음식점·일반음식점 중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분식점, 패스트푸드, 편의점은 제외</li> </ul> </li> </ul>

○ 홀덤펍 등

- 「식품위생법」에 의거 일반·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펍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및 보드카페 등 게임을 하면서 주류·음료·식사료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

○ 무인카페

- 「식품위생법」에 의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득하고 관리자·종사자가 매장 내 상주하지 않으며, 고객이 자판기 등에서 커피·음료·디저트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곳

4. 법적근거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

- (제1항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- (제1항제2호)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- (제1항제2호의2)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

- 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
   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
 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
    - (제2항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  - (제4항제1호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※ 마스크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490호 「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」에 따름

5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년 1월 4일 00시부터
6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7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8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

붙임 핵심방역수칙 (2.5단계) 1부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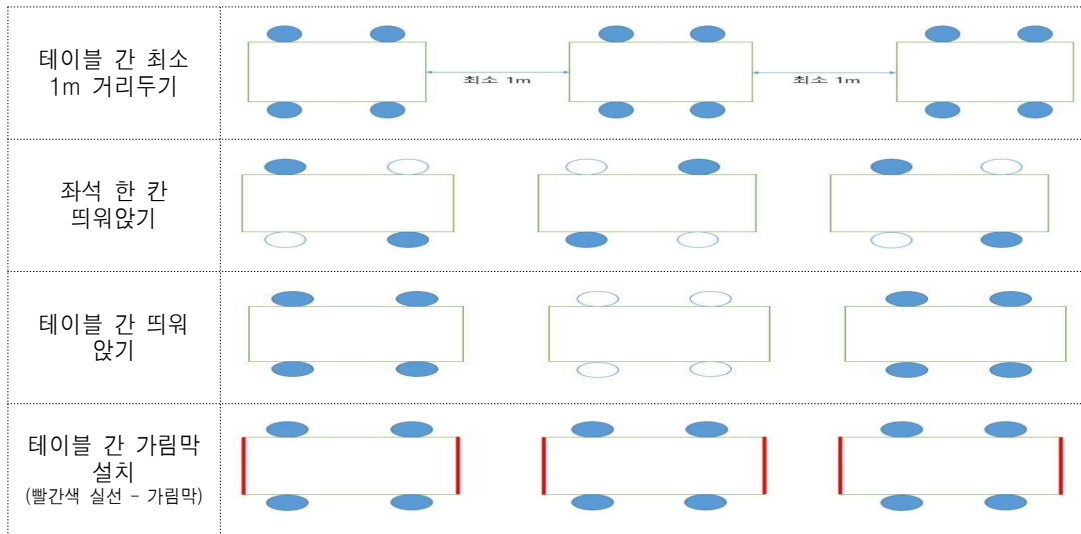
**붙임**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*핵심방역수칙 (2.5단계)**

① 음식점(일반·휴게·뷔페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음식점 (휴게·일반)	①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,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·배달만 허용 -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만 판매할 경우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·배달만 허용 (단, 식사류와 곁들이는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는 21시까지 매장 내 제공 허용) ②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- 식당의 관리자·운영자는 가족 등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 *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, 결혼식,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예외 허용 ③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150㎡이상 음식점 :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(의무) - 150㎡미만 음식점 :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작성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④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⑤ 방역관리자 지정 ⑥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⑦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⑧ 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⑨ 50㎡ 이상 음식점 및 제과점 Ⅰ) 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Ⅱ)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Ⅲ)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Ⅳ) 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⑩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⑪ 주문·계산 시 종사자와 이용자간 거리 두기 - 주문·계산대 앞 칸막이·가림막 설치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(바닥표시) ⑫ 주문·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 ⑬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 안내문 부착 ⑭ 영업장 내 설치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행위 금지	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·배달만 허용 -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·배달만 허용 (단, 식사류와 곁들이는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는 21시까지 매장 내 섭취 허용) ②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*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, 결혼식,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예외 허용 ③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④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⑤ 마스크 착용 *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, 주문·계산·대화 및 이동 시 착용 ⑥ 주문·대기 시 이용자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 ⑦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 (권고)

구분	관리자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뷔페 추가적용	① ~ ⑭ 공통 ⑩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*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⑮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 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	① ~ ⑥ 공통 ⑦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⑧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 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
< 좌석 도식도(예) >



※ 테이블은 몇인용인지, 모양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테이블을 의미하며, 가림막은 높이 90cm 이상, 길이는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것 사용 권장

② 카페

구분	관리자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카페 (휴게·일반 음식점 및 제과점)	①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·배달만 허용 ②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150㎡이상 음식점 및 제과점 :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(의무) - 150㎡미만 음식점 및 제과점 :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작성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③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④ 방역관리자 지정 ⑤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⑥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⑦ 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⑧ 매장 입구 등에 손 소독제 비치 ⑨ 주문·계산 시 종사자와 이용자간 거리 두기 - 주문·계산대 앞 칸막이·가림막 설치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 두기 (바닥표시) ⑩ 주문·대기 시 이용자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	①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②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③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④ 마스크 착용 * 주문·계산·대화 및 이동 시 착용 ⑤ 주문·대기 시 이용자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

③ 무인카페

구분	관리자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무인카페 (식품자동 판매기)	①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·배달만 허용,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②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(대장작성) ③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	①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②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③ 마스크 착용 * 주문·계산·대화 및 이동 시 착용

※ '이용자' 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8호

**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 
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**

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연장시행(2021.01.04.)과 관련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,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월 4일  
서울특별시

1. 기 간: ' 21년 01월 04일(월) 0시 ~ ' 21년 01월 17(일) 24시
2. 대 상: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업
3. 내 용: 위 기간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내 집합제한 조치  
(방역수칙 준수 의무화)
4. 위반 시 조치사항
  -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
    - ▶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,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(10만원)
  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(기본 2주)
  -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(벌금 300만 원)
  -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,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
  -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

□ 목욕장업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①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②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③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 ④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	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 ② 마스크 착용  ③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⑤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 · 신고면적 16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li> <li>⑥ 시설 내 음식(물 · 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</li> <li>⑦ 사우나 · 한증막 · 찜질시설의 모든 발한실 운영금지</li> <li>⑧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유지 되도록 구획 표시</li> <li>⑨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</li> <li>⑩ 탈의실내 물품보관함 한칸 이상 간격두어 배정하기</li> </ul>	
<p>② 이 · 미용업</p>	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 ·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 · 이용(권고) **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</li> <li>②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③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 · 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 <li>④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</li> <li>⑤ 시설 허가 · 신고면적 8㎡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li> <li>⑥ 21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중단</li> <li>⑦ 손님 예약제 운영</li> <li>⑧ 손님 음료 제공 금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② 마스크 착용</li> </ul>

③ 숙박업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행사·파티 등 주최 금지 * 연말연시 파티, 바비큐 파티, 클럽 파티,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</li> <li>▶ 전체 객실 수의 2/3 이내로 예약 제한</li> <li>▶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*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</li> <li>▶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·파티 참여 금지</li> <li>▶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</li> </ul>

※ '이용자' 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
 ※ 상기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며,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수칙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.

5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
  - (제1항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  - (제1항제2호)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  - (제1항제2의2호)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
  -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
  - (제2항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(제4항제1호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: 2021년 01월 04일 00시부터

7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제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9. 담당부서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9호

**특수판매업(방문판매·후원방문·다단계) 집합금지명령(기간연장)**

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기간연장 시행에(2021.1.4. 0시)따라 특수판매업(방문판매·후원방문·다단계)에 대한 기존의 집합금지 기간(2020.12.8. ~ 2021.1.3.)을 연장합니다.

2021년 1월 4일  
서울특별시장

1. 집합금지명령 개요

- 대 상 :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(다단계·후원방문·방문판매, 미신고·미등록 포함) 집합·판매 영업장소
- 기 간 : 2021.1.4.(월) 0시부터 ~ 2021.1.17.(일) 24시까지
- 내 용 : 특수판매업(방문판매·후원방문·다단계)체의 집합행위금지
  - 특수판매 목적으로 '교육·홍보·세미나' 등을 위한 모임 또는 유사한 모든 집합행위(명칭 불문)
  -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불법적 방식의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 대관행위
- 근 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
- 효력발생일 : 2021년 1월 4일 0시

2. 위반 시 조치사항

- 고발조치
 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
 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(300만원 이하의 벌금)
- 업체에서 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·치료비 등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- 불법적 집합행위의 장소를 대관하는 자는 형법상 방조죄로 고발조치

3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0호

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(2.5단계 연장)에 따른  
노래연습장, PC방, 영화관, 오락실·멀티방, 직업훈련기관, 대형유통시설, 콜센터  
등 방역조치 고시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, 일반관리시설 중 PC방, 영화관, 오락실·멀티방, 직업훈련기관, 대형유통시설,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월 4일  
서울특별시

1. 기 간 : ' 21년 1월 4일 (월) 0시 ~ ' 21년 1월 17일 (일) 24시

2. 대 상

- 서울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
- 서울시 소재 일반관리시설 중 PC방, 영화관, 오락실·멀티방, 직업훈련기관, 대형유통시설\* 등
  - \*① 3,000㎡ 이상 대규모 점포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종합소매업
  - ② 유통산업발전법」 규정(제2조 제3호)에 따른 대규모 점포(도매업 제외)  
(예 : 대형마트, 특정 품목(의류·가전·가전용품·서적 등)에 특화된 전문점, 백화점, 쇼펍 센터, 복합쇼핑몰, 공구·아파트 상가 등 그 밖의 대규모점포)

○ 서울시 소재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및 보험회사 전화영업점(대리점)

3. 내 용 : 대상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

○ 노래연습장 : 집합금지

○ PC방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li> <li>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 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</li> <li>▶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</li> <li>▶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(칸막이 내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li>▶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서울시 강화조치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흡연구역 1인 사용</li> </ul>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p>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서울시 강화조치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흡연구역 1인 사용 원칙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 수 제한 표시</li> </ul> </li> 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</li> <li>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</li> <li>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</li> </ul> </li> <li>▶ 좌석 구분 칸막이는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일 것(예. 앉은 시선 높이)</li> <li>▶ 손님이 이용한 좌석은 테이블, 헤드셋, 마우스, 키보드 등 소독 후 재사용</li> </ul>	

※ '이용자' 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
 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○ 영화관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li> 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li>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</li> <li>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 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</li> <li>▶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</li> </ul> </li> <li>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서울시 강화조치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상영관 내 거리두기 좌석 밴딩처리 등 물리적 조치 의무화</li> <li>▶ 매표소, 매장, 대기공간 등 이동 시 거리두기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고객 이동동선을 바닥에 스티커 등으로 표시</li> </ul> </li> <li>▶ 출구와 입구 동선 구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li>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</li> </ul>

※ '이용자' 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
 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○ 오락실·멀티방 등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li> 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li>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</li> <li>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 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</li> <li>▶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</li> <li>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li> <li>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서울시 강화조치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흡연구역 1인 사용 원칙</li> <li>* 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 수 제한 표시</li> <li>▶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이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li>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서울시 강화조치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흡연구역 1인 사용</li> </ul>

※ ‘이용자’ 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
 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○ 직업훈련기관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li> <li>▶ 시설허가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</li> 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li>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</li> <li>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 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</li> <li>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li>▶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</li> <li>*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(전일제 학원)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, 식당방역수칙(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)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</li> </ul>

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p>*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(전일제 학원)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, 식당방역 수칙(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)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</p> <p>〈서울시 강화조치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강의실 입구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li> <li>▶ 수료기준에 맞는 훈련생 조기 종강 권고</li> </ul>	
<p>※ '이용자' 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                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</p>	
<p>○ 대형유통시설</p>	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온라인 배송 등 비대면 서비스는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 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</li> <li>▶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</li> <li>▶ 시식·시음·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</li> <li>▶ 집객행사 금지</li> <li>▶ 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·의자 등)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</li> </ul> <p>〈서울시 강화조치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문화센터·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금지</li> <li>▶ 이용객 대상 무료 식음료 제공 금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li>▶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</li> <li>▶ 시식·시음·견본품 사용 금지</li> <li>▶ 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·의자 등) 이용 금지</li> </ul>
<p>※ 대형유통시설 내에서 운영중단 대상이 되는 '어린이 놀이시설' 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(제2조 제1호 및 제2호)」에 따라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·외 놀이공간' 을 의미하며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키즈카페는 제외</p> <p>※ '이용자' 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                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</p>	

○ 콜센터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</li> <li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서울시 강화조치〉</li> <li>▶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1/2 강력 권고</li> <li>▶ 모든 출입자 통제관리 및 모든 근무자 대상 1일 2회 이상 발열증상 점검</li> <li>▶ 발열 등 의심환자가 3~4일 내 동시 발생시 (2~3명 이상) 모든 유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</li> <li>▶ 직원 간 거리두기(2m 이상, 최소 1m 이상) 및 칸막이 설치(90cm 이상)</li> <li>▶ 휴게실, 교육장 등 공용공간 이용 제한</li> <li>▶ 단체식사 및 대면교육 제한</li> <li>▶ 환기(매 2시간), 소독(물품 등 일 2회, 전체 사업장 주1회 이상) 실시</li> <li>▶ 일일 방역관리대장 기록 · 관리</li> <li>▶ 서울시 소재 콜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든 직원 마스크 착용</li> <li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서울시 강화조치〉</li> <li>▶ 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</li> <li>▶ 사무기기 등 개인공간 소독 등 방역관리</li> <li>▶ 구호외치기 등 금지</li> </ul>

※ '이용자' 라 함은 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·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
 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4. 위반시 조치사항

-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·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
  -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,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(10만원)
-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집합금지(기본2주) 조치 병행가능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
-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,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
-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

5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의제7호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
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년 1월 4일 0시 부터

7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

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9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(노래연습장 02-2133-5238,  
PC방·오락실 02-2133-5242, 영화관·멀티방 02-2133-5236,  
대형유통시설 02-2133-5258, 콜센터 02-2133-5244),  
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(직업훈련기관 02-2133-5465)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